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. 9. 21 선고 2021가단1106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

담당변호사 김정태

변 론 종 결 2023. 8. 10.

판 결 선 고 2023. 9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C은 2019. 3. 25.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9년 제663호로 ‘원고는 2019. 3. 25. C에게 2억 2천만 원을 변제기 2020. 3. 31., 자연이자 연 15%로 하여 대여한다’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(이하 ‘이 사건 공정증서’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9. 3. 22.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수하였고, 2020. 3. 27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, 주식회사 E은 선의로 보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.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,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2억 2천만 원 중 일부인 5천만 원의 범위에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.

나.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오히려 을 제6, 7, 10, 11,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2억 9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)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동호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
 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

철근콘크리트구조
 (철근)콘크리트자중
 지하2층 제1층 근원생활시설
 지2층 921.7757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22층 호
 철근콘크리트구조
 40.0332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14465㎡
 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대지권
 대지권의비율 : 1. 14465분의 52.5816

- 이 상 -

